# 2016년 예산편성 관련 주요경비

-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경비
-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법정경비)
-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경비

### 1. 우리구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구 분	산출기초
사무관리비(201-01)	
기본사무용품	15,000원×현원
복사용지	21,500원×상자수×12월
전산소모품	
- 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 포함)	흑백 : 165,000원×팀수×4회
	칼라 : 200,340원×4색×4회
- 복사기토너(드럼 포함)	165,000원×1대×4회
- 모사전송기 토너(기타 소모품 포함)	154,000원×1대×4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7,000원×현원×20식×12월(동 22식)
국내여비(201-02)	
기본업무추진 여비	20,000원×현원×15일×12월

※ 사무관리비는 경상적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3년간 집행실적**을 면밀히 파악하여 2015년 예산 수준 유지 및 감액 편성

#### 위원회 운영수당

- 경비성격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기 준 액: 100,000원 범위내/1회※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1회에 한함)
- 계상기준

참석수당	심사수당
<ul> <li>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li> <li>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li> <li>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li> <li>지급할 수 없음</li> <li>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li> <li>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수 없음</li> </ul>	<ul> <li>□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li> <li>□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li> </ul>

**일 · 숙직수당 : 60,000원 이내** / 1일, 1야

#### ■ 최저임금 단기

○ 최저임금액 (2016년)

업 종	시 간 급	비고
모든산업	6,03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름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대 상: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편성방법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15년 1월 1일 기준)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5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예산편성 불가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부 문	기관명	인터넷 홈페이지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2.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법정경비)

**길 인건비성 경비 :** 봉급,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 20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379~418 Page 참조

#### ■ 실비보상 등

구 분	지급기준액	비고
●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120%	설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0 2 m / 1 m	월 <b>6</b> 년 기의 12070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 연가보상비	6월 30일 : 5일 12월31일 : 15일이내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
	월 650,000원	구청장
	월 500,000원	부구청장
	월 400,000원	국장
● 직급보조비	월 250,000원	과장 및 동장, 일반임기제 나급
	월 155,000원	6급, 일반임기제 다급
	월 140,000원	7급, 일반임기제 라급
	월 105,000원	8.9급, 일반임기제 마급

#### 🔛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고
● 의정활동비		월 9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b>→</b> ⊣′8₹	3 <del>5</del> 11	월 200,000원	보조활동비
● 월정수당		월 2,695,000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20,000원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이나
	국내 숙박비 46,000원 출장 및 거리가 12km미만여	출장 및 거리가 12km미만이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	
● 여비		식 비 25,000원	지급
	국외	년 2,000,000원	기준액의 25%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 메 여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고					
● 국내여비	일 20,000원	<ul> <li>기본업무수행경비(관내):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편성</li> <li>관외출장여비(국내): 총무과, 의회사무과</li> <li>공무원 교육여비: 총무과</li> <li>※ 보조사업 등 특별사업 추진 여비는 해당부서</li> </ul>					
<ul><li>국외여비</li></ul>		<ul><li>국외업무여비 : 총무과, 의회사무과</li><li>국제화여비 : 총무과</li></ul>					

## 3.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경비

## 🔲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고
<ul><li>의정운영공통경비</li></ul>	의원 1인당 4,800천원	<ul> <li>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li> <li>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범위내 증액편성</li> </ul>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15년 기준)	의장 3,300천원 부의장 1,600천원 상임위원장 1,100천원	<ul><li>안전행정부 기준액 범위내에서 시에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li></ul>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원 : 2,000천원×정원	· 기준액의 25%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 🔲 업무추진비

구 분	지급기	기준액	비고
	구청장	78,100천원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56,100천원	동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국장, 보건소장	3,300천원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동장	6,600천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에서 산식에 의	해 결정 통보	∘ 기준액=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 연동액×보정계수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본청, 구의회> 정원별 1인당 15	천원 ~ 80천원	<ul><li>성격: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li><li>기준: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li></ul>

	<u></u>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원별 1인당 20천원		(20	15. 10	. 1. 2	기준)		
			∘ 기준 - 본청	•	회사무국	_		(단위:원)
			정원	100명 까지	101~ 300명	301~ 600명	601~ 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	60,000	45,000	30,000	15,000
			- 동주	민센터,	보건소	<u>:</u>		(단위:원)
			정원	100명 까지	I .	1~ )명 1	401~ ,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	0 30,0	000	25,000	20,000
● 직책급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과장 동장 의회전문위원 직장예비군중대장	650,000원 600,000원 350,000원 400,000원 100,000원 150,000원 80,000원					성 활동 로 지·	에 소요 급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5인이하 실.과 100,000원 350,000원 30인이하 실.과 350,000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추가 수가 (2015. 10. 1. 기준)							

● 특정업무경비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대민활동비	50,000원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80,000원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세무담당공무원	100,000원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예산담당공무원	150,000원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여론.동향전담공무원	100,000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6급이하)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60,000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 **▋ 등**리·반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이내 상여금 연 200%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경비성격:「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기 준 액 : 1인당 평균 1,492천원

※ <u>해당 자치단체 '1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5년과</u> 동일하게 편성

### **| 강**사수당 지급기준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별표6)

○ 일반 지급기준

7	L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I)	1시간당	100 이내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 인정하는 자	히
	특강 (Ⅱ)	최초1시간	40	* 전·현직 장관(급)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시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자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         및 이에 준하는 자       보원장이 인정하는 자	·로
		초과 (매시간)	30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표(급) -
	특강	최초1시간	3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101/7)
일	(III)	초과 (매시간)	20		원(급) -
반	일반	최초1시간	23	° 전·현직4급이상, 똠능 막사학위국지 공독원 및 이에 춘하는 자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인사
	(I)	초과 (매시간)	12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일반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П)	초과 (매시간)	10	°선·현역 3합이야 증구권 꽃 이에 눈아는 자	
	보조 강사	1시간당	4		
	정보화	최초1시간	15	° 젔·현즧(급) 상, 똠능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I)	초과 (매시간)	10	° 전·현직4급이상	'
	정보화	최초1시간	10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택이에 준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력자
정보	(Π)	초과 (매시간)	8 (5)	이에 순하는 사 ()는 스타르퇄용강사에 적용 ( ) 는 스타르퇄용강사에 적용 (	
정보화덐얘	정보화	최초1시간	8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자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III)	<u>초</u> 과 (매시간)	7 (5)	및 이에 순하는 자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석용	
	사이버 정보화	교육기간내 1일당	2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등 2회 이상 실시자	활동
	보조 강사	1시간당	4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del>:</del> 자
글	전체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볿	강의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력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巾마대 페망다하다 하	분임	A급	11	<ul><li>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li><li>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li></ul>	
<del>학</del>	문임   강의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사교	이 버	교육기간내 1일당	2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등 2회 이상 실시자	활동

※ 일반지급기준 이외에 강사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 준용